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71
----------	-------

발의연월일 : 2026. 8. 20.

발 의 자 : 이언주 · 김한규 · 오세희
송재봉 · 정준호 · 안태준
안도걸 · 김우영 · 남인순
박범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 편집하는 경우, 이를 판매, 임대 반포 등을 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와 비교해서 젠더폭력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평가되므로,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

이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다만 영상물등은 정보통신망과 결합하여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성요건에서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서 구성요건의 사각을 배제하고자 함(안 제14

조의2제6항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타인[사자(死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도 제5항과 같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타인[사자(死者)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모욕 하려는 목적으로 제1항부터 제 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도 제5 항과 같다.</u>